



일리노이 주 대법원

언어 접근 정책

2014년 10월 1일 발효

Korean

# 일리노이주 대법원 언어 접근 정책

## I. 서문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사법의 강점과 통합을 보장하고 우리의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법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언어 제한이나 장애에 상관없이 주 전체에서 영어 비능숙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사법 행정을 수행하려면 우리 주의 법원이 모든 사람(영어가 능숙하지 않거나 청각 장애나 난청이 있는 사람 포함)에 대해 언어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일리노이 주의 법원이 주 전체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에 대해 통일된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종합적인 언어 접근 프로그램의 구현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고, 순회재판구에 특정한 언어 접근 계획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합니다.

법원 내의 형사 및 민사 소송 절차에서, 그리고 법원 연계형 절차를 위해, 자격이 있고 교육을 받은 통역사와 명확하고 다중 언어로 표시된 표지판을 제공하는 것이 대법원의 비전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이 있고 교육을 받은 외국어 통역사 조직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구현 및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통역과는 달리, 수화 통역 분야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2007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일리노이주 통역사 면허법(Illinois Interpreter for the Deaf Licensure Act)에 따라 수화 통역사를 평가 및 인증하기 위해 전국적 및 지역적으로 기준을 개발했고, 현재 일리노이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외국어 통역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전체 외국어 법정 통역사에 대한 3단계 인증 프로그램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외국어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공인 또는 등록 통역사를 지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언어 접근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적절한 자금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 예산, 정부 보조금 또는 다른 자금 출처가 지원하는 자금의 증가를 요청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어 접근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자금 제공에 대한 우선 순위는 중저소득층 주민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공정성, 사법에 대한 접근, 사법 절차 통합의 근본 원칙, 일리노이주 헌법에 의해 정착된 정당한 법 절차, 평등한 보호, 사업 독립성의 원칙, 그리고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VI편 포함하는 주법과 연방법의 법적 요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포함된 지침을 사용하여, 영어 비능숙자 또는 청각 장애나 난청이 있는 사람이 일리노이 주 법원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 사법부가 그들이 직면하는 장애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더 충실히 갖추기를 희망합니다.

## II. 정의

1. "법원 연계형 절차"란 법원 행정관 또는 공식 피지명자가 관리하는 법원 절차(예를 들면, 강제 중재 또는 조정, 보호관찰 연락, 법원이 명령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2. "외국어 통역사"란 영어와 다른 언어에 능숙하고, 한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구두로 다른 언어로 전환하면서도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역사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역사"는 한 언어로 쓴 글을 다른 언어로 쓴 글로 전환하는 "번역사"와 다릅니다. 이 정책에는 서면 번역 보다는 법원 절차에서 수행하는 통역에 적용되는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 a. "공인 통역사"란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제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공인되고,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관리하는 주 전체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어 통역사를 의미하고, 이 정책의 제V조에 규정된 이해의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 b. "등록 통역사"란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제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되고,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관리하는 주 전체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어 통역사를 의미하고, 이 정책의 제V조에 규정된 이해의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 c. "비등록 통역사"란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제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공인 또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영어와 외국어가 능숙하다는 것을 증명한 외국어 통역사를 의미하고, 이 정책의 제V조에 규정된 이해의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3. "언어 접근 서비스"란 영어 비능숙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접근을 제공하는 전체적인 언어 서비스를 의미하고, 이러한 서비스에는 직접 통역사 서비스, 전화 및 비디오 원격 통역사 서비스, 서면 자료의 번역, 이중 언어 직원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4. "소송 절차"란 (a) 이 주의 모든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원 절차(형사 또는 민사), 그리고 (b) 모든 법원 연계형 절차(일리노이 주 대법원 규칙에 의한 법원 연계형 중재 또는 강제 중재와 같은)를 의미합니다.
5. "영어 비능숙자"란 영어 이외의 한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소송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사 또는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 "당사자"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원고 또는 피고를 의미하고,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 또는 방어하는 사람, 미성년 당사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그리고 원고 또는 피고의 법적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형사 및 청소년 절차에서는, "당사자"라는 용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7. "수화 통역사"란 어떤 사건 또는 법원 기능의 일부로 수화 또는 다른 손 동작이나 구두 표현을 사용하여 법률 전문가와 청각 장애, 난청 또는 시청각 장애가 있는 당사자, 증인, 배심원 또는 참관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a.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의 등록부에 기재된 수화 통역사"는일리노이 주 청각 장애 및 난청 위원회(Illinois Deaf and Hard of Hearing Commission)로부터 "마스터" 또는 "고급" 수준의 면허를 받고,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제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추가 교육 및 등록 요건을 충족시킨 수화 통역사를 의미합니다.
  - b. 1990년 미국 장애인법에 정의된 "유자격 수화 통역사"란 필요한 모든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수용적 및 표현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수화 통역사를 의미합니다.

### III. 통역사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법원은 당사자나 증인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영어 미능숙자에 대해 통역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미국 장애인법과 일리노이 주법(735 ILCS 5/8-1402)에 따라 소송 당사자, 증인, 피해자, 배심원 또는 참관인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청각 장애나 난청이 있는 사람에 대해 유자격 수화 통역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원은 일리노이 주 형사 절차 통역사법(Illinois Criminal Proceeding Interpreter Act)에 따라 서면 명령(725 ILCS 140/2)을 통해서 영어 비능숙 피고에 대해 통역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 IV. 통역사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결정

법원은 모든 소송 절차에 대해 영어 비능숙자 또는 그의 변호사나 다른 옹호자의 요청에 따라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이 없으나, 법원이 해당 개인이 영어 미능숙자라고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 법원은 공개 법정에서 그 개인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개인이 영어를 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개인이 영어 미능숙자라고 결정되는 경우, 통역사를 지명해야 합니다. 시험을 마친 후에, 법원은 공개 법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각 순회재판구의 수석 판사는 영어 비능숙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통역사의 지명 자료를 수집 및 추적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면 명령을 통해서, 소송 파일에

표시하거나, 소송 파일이나 일람표에 메모를 추가하거나, 소송 관리 시스템의 필드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또는 전자 추적 시스템이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 수집한 자료에는 최소한 통역사가 지명되었는지 여부와 요청한 언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각 순회재판구의 언어 접근 계획(제XI조 참조)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영어가 제2 언어인 개인이 약간의 영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개인이 통역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일리노이 주 법원에는 영어 비능숙 소송 당사자와 통역사 사용에 대한 보고 요건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 법원에서 필요한 범위에 대한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방해받으며, 법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지연됩니다. 영어 비능숙 자료의 수집을 시작하는 경우, 법원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하여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와 공유해야 합니다.

- 소송의 종류와 통역되는 언어별로 영어 비능숙 당사자가 포함된 소송 절차의 수
- 소송 절차에 사용되는 통역사의 종류와 그 통역사가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의 통역사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 또는 등록 외국어 통역사,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의 통역사 등록부에 기재된 수화 통역사, 또는 비등록 통역사였는지 여부

## V. 지명되는 통역사의 종류

법원이 외국어 통역사를 지명할 때, 공인 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역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법원이 공인 통역사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 후에 그 통역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록 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통역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연방법원 또는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주정부에 의해 공인되고 실적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충족시킨 인증 요건이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에 의해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한, 이 정책에 따라 공인 통역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법원이 공인 또는 등록 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으나 공인 또는 등록 통역사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등록 통역사를 지명해야 합니다.

비등록 통역사를 지명하는 경우, 법원은 공개 법정에서 그 통역사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통역사가 소송 절차에서 통역할 자격이 있고, 영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숙하고, 이 정책의 이 조에 규정된 이해의 충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수화 통역사를 지명할 때,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 통역사 등록부에 기재된 수화 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역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법원이 등록부에 기재된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 후에 그 통역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미국 장애인법과 일리노이 주법(735 ILCS 5/8-1402)에 따라 유자격 통역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원은 이 정책의 제III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개인을 소송 절차에 대한 통역사로 지명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1. 통역사가 당사자 또는 증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업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2. 통역사가 당사자 또는 증인의 가족, 가구 구성원 또는 친구인 경우
3. 통역사가 잠재적 증인인 경우
4. 통역사가 통역 이외의 목적으로 고용된 법원 직원인 경우
5. 통역사가 법 집행관이거나 보호관찰 부서의 직원인 경우
6. 통역사가 소송의 결과에 대해 금전적 또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통역사가 실제이거나 인지된 이해의 충돌이 있거나 있을 수 있고, 또는 통역사의 지명이 부적절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8.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통역사의 지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경우

## VI. 통역사에 대한 선서 요건

모든 비등록 통역사는 어떤 소송 절차에서 통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하루에 몇 건의 소송 절차에 대해 통역을 하기 전에, 공개 법정에서 그 통역사가 법률이 규정한 기준과 통역사의 직업 윤리에 따라 최선의 능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충실하고 공정한 통역을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법원에 대해 그 사람의 진술을 영어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복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작성한 모든 진술을 영어로부터 수화 또는 영어 비능숙자의 모국어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선서 또는 확인할 것입니다.

해설: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 통역사 등록부에 기재된 통역사는 지방법원이 파일에 유지할 수 있는 서면 선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비등록 통역사는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파일에 유지할 서면 선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 심리를 하는 동안 공개 법정에서 법원의 조회를 단순화합니다. 그러나, 배심원단 앞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 공개 법정에서 선서를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 VII. 통역사가 인지하는 비밀 정보

통역사는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특권이 제공된 비밀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VIII. 통역사의 교체

법원은 재량에 따라 소송 절차에서 처음에 지명한 통역사를 다른 통역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통역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교체는 공개 법정에서 해야 하고, 이 정책의 제V조에서 설명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영어 비능숙자, 변호사 또는 옹호자가 지명된 통역사가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영어 비능숙자, 변호사 또는 옹호자는 다른 통역사를 지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X. 통역사 서비스에 대한 지불

영어 비능숙자는 통역사 지명에 대해 어떤 요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카운티 정부 또는 통역사가 지명된 사법 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책임입니다. 재판장은 통역사에게 지불할 보수 금액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순회재판구 수석판사가 정하는 통역사에 대한 요금 일람표를 따를 것입니다.

해설: 언어 접근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사법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영어 사용자와 영어 비능숙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법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소송 절차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서비스 요청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영어 비능숙 개인에게 언어 접근 비용 지불에 대한 불균형한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언어 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자금을 확보할 것이며, 사법부 예산, 정부 보조금 또는 다른 자금 출처가 지원하는 자금의 증가를 요청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X. 인증 및 등록 프로그램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는 외국어 통역사를 위한 종합적인 인증 및 등록 프로그램을 제정 및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는 영어와 통역할 언어의 서면 및 구두 능숙도 기준을 정하고 채택할 추가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는 일련의 원칙들을 정하여 통역사의 행동을 유도하고 예상되는 행동의 수준에 대해 판사들을 교육하는 윤리강령을 유지할 것입니다. 소송 절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어 및 수화 통역사는 주 전체 등록부에 기재되는 것 여부에 상관없이,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채택한 통역사에 대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는 이 행정처가 인증 및 등록된 외국어 통역사에 대한 현재의 등록부를 편집, 유지,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의 허가에 따라 외국어 통역사에게 시험, 교육, 인증, 등록에 대한 적절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은 외국어 통역사 기금으로 입금될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는 커뮤니티 칼리지와 다른 공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 그리고 다른 공공 또는 민간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공인 외국어 통역사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준비 교육과정과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정할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주 전체에서 편리하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공인 외국어 통역사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험은 일리노이 주 전체에서 편리하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외국어 법정 통역사의 시험, 교육 및 인증에 대한 비용은 총당 조건에 따라 외국어 통역사 기금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른 자금 출처로부터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화 통역사의 인증 및 면허는 2007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일리노이 주 통역사 면허법에 의한 주법, 1990년 미국 장애인법에 의한 연방 기준, 그리고 전미 청각 장애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사 등록부(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같은 인증 단체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에 유의해 주십시오.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의 등록부에 기재된 수화 통역사는 청각 장애 및 난청 위원회로부터 "마스터" 또는 "고급" 수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제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추가 교육 및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XI. 언어 접근 계획

각 순회재판구는 연차 서면 언어 접근 계획을 작성하여 영어 비능숙자에 대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순회재판구에 특정한 언어 접근 계획을 수립하면 각 순회재판구는 가장 자주 신청하는 언어를 식별하고, 순회재판구의 법원들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관행과 절차를 확인하고, 자주 신청하는 언어들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언어 접근 자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 대한 순회재판구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카운티를 관할하는 순회재판구의 법원들은 재량에 따라 카운티에 특정한 언어 접근 계획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어 접근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원 직원들이 법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영어 비능숙자의 언어 필요를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한 절차
-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영어 비능숙자에게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 법원 사용자에게 통역사 서비스에 대한 권리 및 가용성을 통지하기 위한 절차
- 판사와 법원 직원이 영어 비능숙 당사자 또는 증인에 대한 통역사의 지명 자료(신청한 언어 포함)를 수집 및 추적하기 위한 절차
- 서면 자료의 번역 필요를 평가하고, 그러한 번역 필요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자료를 번역하기 위한 절차
- 판사, 법원 서기 및 다른 법원 직원들에게 언어 접근 계획의 요소와 언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통역사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
- 영어 비능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어 접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의 리스트
- 언어 접근 계획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 계획을 모니터하기 위한 과정

각 순회재판구는 언어 접근 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법원 사용자의 언어 필요에 대한 변경과 법원 절차에 대한 변경, 그리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현하는 관행을 반영해야 합니다.

각 순회재판구의 언어 접근 계획과 차후의 업데이트는 일리노이 법원 행정처가 매년 검토하여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반드시 정확하게 반영 및 해결할 것입니다.